



: 2020-11-23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2270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군수
변 론 종 결 2020. 8. 21.
판 결 선 고 2020. 10.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4. 원고에게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3. B 승용자동차(이하 종전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등록하



면서 다자녀 양육지원 감면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9. 6. 18. C 승용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2항 제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 종전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를 안내하였고, 원고는 2019. 10. 25. 취득세 2,823,07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1.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정한 대체취득으로 인한 감면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취득세를 환급해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12. 9.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정한 대체취득 감면요건을 갖추었고, 비록 원고가 60일이 경과하기 전에 종전 자동차를 원고의 명의로 재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았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배

원고는 자동차 등록사업소(양산시 웅상출장소)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종전 자동차를 원고 명의로 다시 등록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안내받고 이를 신뢰하여 종전 자동차를 다시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이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동차를 다자녀양육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1대에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대체취득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하여서는 형식적으로 종전 자동차에 관하여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폐차, 양도 등을 통하여 종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종전 자동차에 관하여 2019. 8. 16. D 명의로 이전등록이 되었다가 같은 날 바로 원고 명의로 다시 이전등록이 된 사실, 위 각 이전등록에 필요한 매매계약서에는 모두 매매대금이 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와 D 사이에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이 수수되지는 아니한 사실, D 명의의 이전등록에 따른 취득세도 원고가 납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종전 자동차에 관하여 D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종전 자동차를 D에게 양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위 시행령 제10조의2가 규정하는 대체자동차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자동차 등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감면받은 차량을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가 공동명의자가 단독으로 재취득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⑤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31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자동차 등록사업소의 담당 공무원이 종전 자동차의 재취득이 가능하다거나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처분권한자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2020-11-23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 원을 초과하면 140만 원을 경감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2.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의 경우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2(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

법 제22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끝.